

2020 제5호

#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 ◆ 맞춤형 법제정보

중 국 낚시어선업법제

스웨덴 기업활력법제

## ◆ 외국법제동향

미 국 가상화폐세법

미 국 「공정주택법」

일 본 임대용 주택관리법제

독 일 암호화폐 수탁업법제

중 국 「암호법」

국제기구 해상 사이버 리스크 규범



#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 외국법제동향

# 중국의 「암호법」 주요 내용

정재준 | 중국 국립산동대학교 법학원 교수, 법학박사

## I. 시작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암호법(中华人民共和国密码法)」이 2019년 6월 10일 국무원<sup>1)</sup>의 의결을 거쳐 채택된 후, 2019년 10월 26일 제13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sup>2)</sup> 상무위원회<sup>3)</sup>가 이를 통과시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미 중국 국가암호관리국은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암호법 초안」, 이하 「암호법 초안」에 대한 정정과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에 공개했고, 2017년 6월 국무원에 「암호법 초안」이 보내진 이후, 이 초안을 받은 사법부가 각 부서 의견을 수렴해 국가암호관리국과 「암호법 초안」에 대한 검토 개정을 거쳤다. 그 후 중요 국가기관인 중앙망신판,<sup>4)</sup>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등과 소통을 거듭한 끝에 현재의 중국 「암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중국 「암호법 초안」은 총 7개의 장(章)과 4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7개의 장은 제1장 총칙, 제2장 암호 응용, 제3장 암호 안전, 제4장 암호 발전 촉진, 제5장 관리 감독, 제6장 법률 책임, 제7장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최종 통과된 중국 「암호법」<sup>5)</sup>은 총 5개의 장과 4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핵심암호와 보통암호, 제3장은 상용암호, 제4장은 법률책임, 제5장은 부칙이다. 「암호법 초안」과 최종안을 상호 비교할 때 각 장(章)의 명칭과 구분이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국가 혹은 전담 부서의 암호에 대한 통제관리

1) 국무원은 중국 중앙의 정부이며, 집행기관이자 국가 최고 행정기관이다(중국 「헌법」 제85조).

2)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약 3,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매년 1회 개최되는데 헌법개정, 법률제정,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선출, 국무원 총리와 국무원 구성원의 임명 등 국가 중대사의 결정 및 지도부 선출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 최고 권력 기구이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폐회 중인 평상시에는 상설기관인 상무위원회가 전인대를 대신한다(정원 175명).

4) 중국공산당 산하의 중앙사이버안전정보화위원회 사무실(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领导小组办公室)을 가리키며 중앙 네트워크 안전과 정보화 발달의 기능을 하고 있다.

5) 중국 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 (<http://www.npc.gov.cn/>).

와 발달촉진을 양대 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은 유사하다.

인터넷 기술(IT)의 발달과 이에 따른 실생활 적용 확대로 중국은 2016년 11월 7일 「사이버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을 통과시켜 “사이버 안전을 보장하고 사이버 공간의 주권과 국가 안보, 사회의 공익을 보호하며, 국민·법인·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법(제1조 목적)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통화의 소개와 함께 블록체인·암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통화 전자지급결제수단(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DCEP)의 도입 논의<sup>6)</sup> 등으로 암호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암호법」은 이러한 암호의 적용 및 관리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sup>7)</sup> 2005년 3월 25일 ‘국가암호관리위원회 사무실’은 국가암호관리위원회(중앙기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암호관리국(国家密码管理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국적인 암호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국가암호관리국은 공공분야 및 민간산업에 관련된 암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근거법인 「암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sup>8)</sup> 다만, 「암호법」 내에 암호 화폐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암호 화폐와의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 안전, 사회 공공이익, 중국의 국제적 책임 차원과 관련될 경우에는 상용암호라도 중국 정부(국무원 상무부서와 함께 국가암호관리청 그리고 일반 행정관청 내지 관세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sup>9)</sup> 있으며 이는 암호상품인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셈이다. 나아가 2019년 10월 28일, 황치판(黃奇帆)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제1회 상하이 금융회의에서 “일부 기업들이 비트코인과 리브라(libra, 암호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통화 주권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중국 중앙은행(인민은행)이 내놓은 디지털 통화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자화폐 체계로서, 인민은행이 먼저 디지털 통화를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교환한 뒤 이들 기관에서 일반인에게 교환하는 방식이며, 기존 화폐의 디지털화는 아니지만 인민폐의 유통과 국제화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결국 중국 인민은행은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자신감을 피력하였다.<sup>10) 11)</sup> 「암호법」은 전반적으로 암호기술의

6 글로벌금융이슈, “중국 중앙은행디지털통화 시범사업 시행”, 금융브리프 제29권 13호, 2020년, 28면.

7 国家密码管理局政策法规室, 中华人民共和国密码法 解读, 政策法规(Policies & Regulations) December 2019, 50면.

8 「상용암호관리조례」 및 관련 법규가 “국가암호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부여한 각종 관리기능은 국가암호관리국이 행사하게 되었다. 국가암호관리국 홈페이지(<http://www.oscca.gov.cn/>) 2005년 3월 25일자 공고문.

9 중국 「암호법」 제28조.

10 黄奇帆 : 中国央行是全球第一个推出数字货币的央行 五人理投 来自雪球 2019년 10월 28일자 공고문, <https://xueqiu.com/3983581026/134776841>.

11 실제 중국 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CBDC를 본격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2016년에는 디지털 화폐 연구소(Institute of Digital Money)를 신설하고 비공개적으로 디지털토كن 형태의 CBDC 발행 추진을 준비하였다. 刘瑾, 中国人民币法定数字货币探索, 研究报告(2017年 第9期), 清华大学五道口金融学院, 3면.

적용·표준화·발달에 대한 국가의 관리·통제·촉진을 목적으로 함으로 향후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지배권을 다투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때, 중국 정부가 이의 법적 근거 마련의 초석으로 삼으려는 분석이 가능하다.

## II. 중국 「암호법」의 제정 배경

중국 국가암호관리국에서 2019년 10월 26일 발표한 ‘암호법 초안’에 대한 설명서에 의하면, 「암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sup>12)</sup> 첫째, 국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암호 및 보통암호의 기본 시스템, 암호 관리부서 및 암호화 작업 기관(직원)에 대한 법적 보호와 근거 마련, 둘째, 최근의 암호화 비중 확대는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며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명확한 요구 사항들을 법적 규범으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 제고, 셋째, 상용암호에 대한 ‘분권화, 관리 및 서비스’의 개혁 요구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입법 수준에서 재구성할 필요성 등이다. 중국 「암호법」에서 제시하는 제정 목적은 「암호법」 제1장(총칙) 제1조에 나타나 있다. 즉, “암호의 적용 및 관리를 규제하고, 암호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을 유지하고 국가 안보 및 사회적인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며, 시민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sup>13)</sup>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암호법」 제정의 배경을 역사적·국가적·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확장하여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역사적 배경

1930년 1월에 있었던 항일 전쟁 당시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毛泽东)이나 저우언라이(周恩来)와 같은 지도자의 암호화 공작이 그 시작이다.<sup>14)</sup> 당시 마오쩌둥은 ‘기밀규칙(机要规则)’을 승인하고 기본 암호화 작업 시스템을 구축한 후 당 중앙위원회의 암호화 작업을 강화·개선하기 위해 20개 이상의 암호 관련 중요결정을 내렸

12 중국 인민대표대회(中国人民代表大会) 홈페이지(<http://www.npc.gov.cn/>), 2019년 10월 26일자 공고문.

13 第一条 为了规范密码应用和管理，促进密码事业发展，保障网络与信息安全，维护国家安全和社会公共利益，保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制定本法。

14 李兆宗(国家密码管理局局长), 全面贯彻实施密码法 奋力开创新时代密码工作新局面, 交流, 2019年 11月, 41면.

고, 8차례 암호화 공작을 수정했다.<sup>15)</sup> 1949년 10월 1일 중국 정부 수립 이후, 1976년부터 전국 과학기술대학에 암호학과를 신설하였으며, 2019년 10월 24일 시진핑(习近平) 국가 주석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제18차 집단학습 자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혁신의 중심으로 삼고 국가 차원에서 이를 가속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직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암호법」이 통과되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sup>16)</sup> 이러한 중국 공산당 초기부터의 암호화 공작에 대한 역사적인 연원은 중국 「암호법」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항일 전쟁 90주년을 맞아 직접 입안하게 된 결정적 배경이 되었다.<sup>17)</sup> 「암호법」관련 논문들과 중국 언론 매체에서 「암호법」이 ‘중국 특색’을 잘 나타낸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 기인한 것이다.

## 2. 공산당의 효율적 지배 수단

‘암호법 초안’에 대한 설명서와 「암호법」 제1조는 공히 「암호법」 제정 목적을 ‘국가 안보’로 강조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국가 안보란 결국 공산당 중심의 중앙 통제식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며 암호화 작업은 공산당의 지도자들이 절대적 리더십을 고수하는 핵심 수단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央委员会)만이 암호화 작업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주요 암호화 문제는 반드시 당 중앙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sup>18)</sup> 「암호법」 제4조에서 암호화 작업의 정책이나 중요 사업 등은 모두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2015년 7월 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보호할 뿐 아니라 내란·반란·선동 등을 막기 위한 기본법이다.<sup>19)</sup> 이러한 국가 안전을 담보하고 공산당의 지도력을 유지하는 직접적이고 핵심적 영역이 바로 암호화 사업이라는 것이다.<sup>20)<sup>21)</sup></sup>

세계적으로도 인터넷 공간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암호는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는 중요 조치가 된다. 특히 통신, 군대, 무역, 세무, 국민권리의 전자적 인증 등 모든 분야에서 통제의 핵심 열쇠로

15) 李春伟, 深入践行依法治密 为密码事业创新发展保驾护航, 盟委保密机要局, 兴安日报 2020年 6月 15日 第006版 理论.

16) 周誉东·王晓琳, 密码法:“严”“宽”并举 促进密码事业, 全国人大, 2019年 11月 15日, 立法, 46면.

17) 동시에 중국 정부가 2019년 4월 ‘산업 구조조정 지침(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을 통해 그동안 암호 화폐 채굴을 ‘도태 산업’으로 지정했던 방침을 철회하였다. 网易号 홈페이지(<https://dy.163.com/article/ETB227H40519RAAQ.html>).

18) 李兆宗, 앞의 논문, 42면.

19) 이에는 정치 안전, 경제 안전, 인터넷 정보 보호도 포함된다「국가안전법」 제15조.

20) 陈亦超, 构建国家网络安全法律制度体系的重要环节 - 中华人民共和国密码法 几个问题解读 - 网事焦点, 2019年 11月, 56면.

21) 「암호법」은 「국가안전법」, 「사이버보안법」, 「테러방지법」, 「간첩방지법」과 함께 국가 보안법 체계를 구성하여 네트워크 보안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王萍, 2020, 完善密码法治 筑牢网络安全, 中央人大, 2020年 2月 5日.

기능하므로 국가 통제와 관리 하의 「암호법」 제정은 절실하다는 것이다.<sup>22)</sup>

### 3. 국민 편의를 위한 상용암호 촉진

앞서 국가 안보와 공산당의 효율적 지배 수단으로서 「암호법」의 제정 배경은 자칫 「암호법」이 국가 관리와 통제의 도구로서만 기능한다는 편향적 이해를 하기 쉽다. 그러나 상용암호의 경우 기업경제와 사회생활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일반인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용암호는 국민의 경제·사회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온라인 거래에서 은행카드 위조 및 신원 변경 등과 같은 범죄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sup>23)</sup> 과세 분야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 위조 방지 시스템에 상용암호 기술을 사용하여 세무정보를 보호하고, 탈세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사회 관리 분야에서도 상용암호 칩을 이용한 차세대 전자 주민등록증은 신분증 위조, 변조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sup>24)</sup> 이렇게 현대 사회에 필수적인 상용암호에 대한 분류·표준화·체계화·장려정책 등을 법률로 제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현대 법치 국가에서 당연한 사항인 것이다.<sup>25)</sup>

22 李兆宗(国家密码管理局局长), 新时代密码工作的坚强法律保障, 《人民日报》, 2019年 10月 29日 第10版, 52면.

23 王萍, 完善密码法治 筑牢网络安全, 中央人大, 2020年 2月 5日, 47면.

24 霍炜, 贯彻落实密码法推动网络可信体系发展, 信息安全研究, 第6卷第1期, 2020年 1月, 11면.

25 陈红, 国家安全视域下中国特色商用密码信息安全法律体系构建, 哈工大博士论文, 信息安全与通信保密, 2020年 6月, 30면.

### III. 중국 「암호법」의 주요 내용

#### 1. 총 칙

이 법의 제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총칙으로서 암호의 정의와 종류 그리고 암호화 기술 진흥을 위한 국가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암호(密码)<sup>26)</sup>란 “특정 변환방법 사용을 통하여 정보를 암호화함으로써 안전을 인증하는 기술·제품·서비스를 의미”라고 정의하였다.<sup>27)</sup> 이러한 암호는 크게 핵심(核心)암호, 보통(普通)<sup>28)</sup>암호 그리고 상용(商用)암호로 구분된다.<sup>29)</sup> 핵심암호와 보통암호는 국가의 기밀정보<sup>30)</sup>를 보호하는데 사용되는데, 핵심 암호는 국가의 극비 사항을 보호하는 암호이고 보통암호는 국가 차원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사항을 보호하는 암 호이다.<sup>31)</sup> 상용암호는 국가 기밀이 아닌 정보에 속하는 것을 보호하는 암호인데, 시민·법인·기타 조직은 법률에 따라 상용암호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및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sup>32)</sup>

이러한 암호화 사업은 국가의 안보개념과 안보원칙에 조응하여 통일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하는데,<sup>33)</sup> 이는 결국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sup>34)</sup> 핵심 부서로는 공산당 직속의 ‘중앙사이버안전 정보화위원회(中央网信办)’가 있다. 이러한 국가의 암호화 사업 지도기구는 중요지침 및 정책수립, 주요문제 조정, 국가 「암호법」에 따른 지배(일종의 법치) 측진의 사업을 맡는다.<sup>35)</sup> 직접적인 국가 비밀 관리부서들은 국가

26 중국어 ‘密碼’란 용어는 ‘비밀번호’라는 의미로 이메일(e-mail)의 패스워드(password) 혹은 신용카드 결제시의 승인 요청 시 요구되는 (비밀)번호로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중국 「密码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단순한 비밀번호의 영역을 뛰어 넘는 기술·인증·제품·서비스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한국어 ‘암호(暗号)’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며 중국 비밀번호법이라는 직역보다는 중국 「암호법」이라는 표현이 바람직하다.

27 동법 제2조.

28 중국어 보통(普通)은 특별(特別)의 반의어로 통상(通常) 혹은 일반(一般)이란 뜻으로 쓰인다. 중국 「암호법」의 영어 버전 공고문에서 ‘普通’을 ‘ordinary’로 해석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직역 단어인 ‘보통’을 한국어로 그대로 채용하기로 한다.

29 동법 제6조.

30 핵심암호와 보통암호가 국가 비밀이라는 점에서 「암호법」은 핵심암호와 보통암호 관리 측면에서 2010년 제정된 「국가비밀유지법(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国家密码管理局政策法规室, 中华人民共和国密码法 解读, 政策法规(Policies & Regulations) December 2019, 51면.

31 동법 제7조.

32 동법 제8조.

33 동법 제3조.

34 동법 제4조 전반.

35 동법 제4조 후반.

의 모든 암호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현(县)급'<sup>36)</sup> 이상의 행정단위 암호관리부서가 해당 행정구역의 암호 작업을 관리해야 하며,<sup>37)</sup> 이들 현급 이상의 행정부서(자치 인민정부)는 암호 작업과 관리를 국가경제 및 사회개발 계획에 산입한 뒤 필요자금을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sup>38)</sup> 또한 암호화 작업에 관련된 국가기관 및 조직은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이나 시스템에 대한 암호화 작업을 진행한다.<sup>39)</sup>

총칙 후반부에서는 암호화 기술에 대한 국가의 촉진노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는 암호화 기술의 연구 및 적용을 장려·지원하며, 법에 따라 암호화 분야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한다.<sup>40)</sup> 이를 위해서 국가는 암호화 기술의 인재양성 및 조직구성을 강화하고, 암호화에 협력한 기여를 한 조직과 개인에 대하여 표창(상)을 통해 장려한다.<sup>41)</sup> 국가는 여러 형식을 취하여 암호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국민 교육체계와 공무원 교육훈련체계에 포함시켜, 공민·법인·기타 조직의 암호 보안의식을 강화시킨다.<sup>42)</sup> 마지막으로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암호도용 등을 통해서 타인의 암호 보호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할 수 없도록 한다. 나아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암호를 이용하여 국가안보, 사회공익,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경우, 이는 곧 범죄임을 규정하고 있다.<sup>43)</sup> 구체적으로 암호관리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핵심암호 및 보통암호의 안전 모니터링 및 사전경고, 보안위험평가, 주요사항 상담 및 응급조치를 위한 메커니즘을 설정하여 핵심암호 및 보통암호 관리의 연계협조와 우선순위 등을 보장한다.<sup>44)</sup>

## 2. 핵심암호와 보통암호

「암호법」 제2장은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핵심암호와 보통암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핵심암호와 보통암호는 국가 기밀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하여 암

36) 현행 중국의 행정구역은 크게 성급(省級 - 우리나라의 각 도와 유사), 지급(地級), 현급(縣級 - 우리나라의 자치구와 유사)으로 나눌 수 있다. '암호법 초안'은 성급으로 암호화 관리가 진행될 것을 규정(초안 제5조)하고 있으나 통과·시행된 「암호법」에서는 현(县)급으로 낮아졌다.

37) 동법 제5조 전반.

38) 동법 제11조.

39) 동법 제5조 후반.

40) 동법 제9조 전반.

41) 동법 제9조 후반.

42) 동법 제10조.

43) 동법 제12조.

44) 동법 제17조 전반.

호의 과학적 계획, 관리 및 사용을 강화하고,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안기능을 극대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sup>45)</sup> 구체적으로는 암호의 구축(연구·생산), 개선(표준화), 유지(보안), 관리(점검, 지도, 감독) 등에 대한 국가와 암호 관리부서의 의무를 규정하는<sup>46)</sup> 동시에 타 부서의 이에 대한 협조와 업무지원을 규정하고 있다.<sup>47)</sup> 특히 이러한 암호화 관리에 있어서 숨겨진 리스크를 미리 발견한다든가 암호가 외부에 유출되었을 경우 취해야 할 보고와 조사(조치) 의무 등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sup>48)</sup>

핵심암호와 보통암호는 국가의 기밀정보를 보호해야 하므로 국가는 암호 관련 부서의 조직을 강화하여 직무 책임을 완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핵심암호, 보통암호 작업에 필요한 인원 채용, 선발, 비밀유지, 심사, 훈련, 대우, 상벌, 교류, 탈퇴 등의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sup>49)</sup> 또한 암호 관리부서와 암호 업무조직은 엄격한 감독 및 보안 심사 제도를 확립하고 업무 직원들의 법률 및 기술 준수를 감독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조직의 보안 심사를 전개하도록 한다.<sup>50)</sup>

### 3. 상용암호

「암호법」 제3장은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용암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기밀정보를 취급하는 핵심암호와 보통암호와는 달리 상용암호는 주로 민간에서 폭넓게 사용하게 됨으로 국가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체계에 상용암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51)</sup>

#### (1)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비차별 원칙

각급 자치정부와 관련부서는 ‘비차별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상용암호화에 대한 연구, 생

---

45 동법 제13조와 제14조.

46 동법 제15조.

47 동법 제19조.

48 동법 제19조 후반.

49 동법 제18조.

50 동법 제20조.

51 동법 제21조 전반.

산, 판매, 서비스, 수출입 조직 등에서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상용암호 기술 협력과 개발을 장려한다. 특히, 행정부서가 상용암호를 강제로 양도하기 위한 관리 수단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용암호의 연구, 생산, 판매, 서비스 및 수·출입에 있어서의 사용이 국가 안보나 사회적 공익 혹은 타인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아울러 명시하고 있다.<sup>52)</sup>

## (2) 국가의 상용암호 표준화 노력

국가는 상용암호의 표준화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즉, 국무원의 표준화 관리부서<sup>53)</sup>와 국가암호관리부서<sup>54)</sup>는 국가적 차원에서 상용암호에 대한 산업 표준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단체와 기업이 독립적인 혁신 기술을 사용하여 국가적 기준과 산업적 표준 및 관련 기술의 요구 사항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상용암호를 표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sup>55)</sup> 이러한 상용암호의 표준화는 국가·기업·사회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이 국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중국 및 외국 표준에 맞추어 국제화된 상용암호의 표준화 변환 및 사용을 촉진하는 것도 포함된다.<sup>56)</sup>

## (3) 국가의 상용암호 촉진 정책

상용암호를 사용하는 주체가 관련 법률이나 규정, 표준화 등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가는 이를 관리하고 상용암호의 보호기능을 개선하며 사용주체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sup>57)</sup> 구체적으로 국가는 상용암호 검측·인증 시스템과 그 기술의 개발을 장려한다.<sup>58)</sup> 상용암호 검사·인증기관은 법에 따른 관련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고, 법률과 행정법규에 따른 상용암호의 검사·인증·기술·규범·규칙을 전개

52 동법 제21조 후반.

53 국무원의 표준화 관리부서는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도 단위별로 표준화 작업에 관여한다. 중국 바이두 백과사전(<http://www.baidu.com/>).

54 국가적 차원의 암호관리부서로는 수도인 베이징시에 위치한 '국가암호관리국(国家密码管理局)'이 있으며, 각 성(省)급 암호관리부서로는 '베이징시 암호관리국', '산동성암호관리국' 등을 포함하여 현재 총 17개 암호관리국이 있다. 국가암호관리국 홈페이지(<http://www.oscca.gov.cn/>).

55 동법 제22조.

56 동법 제23조.

57 동법 제24조.

58 동법 제25조 전반.

해야 한다. 아울러 상용암호 검사·인증기관은 이러한 상용암호 촉진과정에서 습득한 암호의 비밀유지의무를 진다.<sup>59)</sup> 또한 상용암호 산업협회 등의 조직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상용암호에 대한 정보·기술·교육·서비스 등을 상용암호 전문가들에게 제공하여 이들이 상용암호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sup>60)</sup>

#### (4) 상용암호와 국가 안보(공익)의 충돌 방지

상용암호화 제품이 국가 안보, 국가 경제, 공공의 이익에 관계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른 ‘네트워크 중요장비 및 사이버 보안 전용제품 목록’에 포함시켜야 하며, 인증기관의 검증을 통과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sup>61)</sup> 상용암호가 보호하는 중요한 정보 인프라를 운영하는 자는 상용암호 보안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를 충족하여야 한다. 이 운영자는 상용암호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이버안전법」에 따라 국가 암호관리부서와 국가 통신부서 등이 개입하여 조직한 유관 부서에 의하여 국가 안전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sup>62)</sup> 국무원의 상무(business) 주관 부서와 국가 암호관리부서는 국가 안보, 공공의 이익이 포함된 상용암호에 대하여는 수입을 허가제로 하고 수출은 통제해야 한다.<sup>63)</sup> 즉, 상용암호 수입허가명세서와 수출통제명세서는 국무원 상무주관 부서가 국가 암호관리부서와 관세청이 함께 작성해 공지한다.<sup>64)</sup>

#### (5) 국가의 상용암호 관리와 통제

국가 암호관리부서는 상용암호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정부 사업 및 전자인증 서비스에 참여하는 조직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전자서명 및 데이터 메시지를 관리한다.<sup>65)</sup> 또한 국가 암호관리부서는 상용암호에 대한 일상감독 및 불시조사를 결합한 사후 ‘현장감독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효율적이고 통일된 상용암호 감독·관리 체계

---

59) 동법 제25조 후반.

60) 동법 제30조.

61) 동법 제26조 전반.

62) 동법 제27조 후반.

63) 동법 제28조 전반.

64) 그러나 국민 대중의 소비 관련 제품 상용암호는 이러한 수입허가와 수출통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법 제28조 후반.

65) 동법 제29조.

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한다.<sup>66)</sup> 국가의 상용암호 관리와 통제 과정에서 습득된 소스 코드와 같은 암호 관련 독점정보는 공개하지만,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장되어야 하며 나아가 불법적으로 외부에 공개해서도 안 된다.<sup>67)</sup>

## 4. 법적 책임

「암호법」 제4장 법적 책임은 제32조부터 제41조까지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된 사항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 시정명령, 경고, 불법수익 몰수, 벌금 등의 책임을 져야 하며 범죄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책임도 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이버안전법」에 의거한 개인이나 국가의 정보 보호 의무(제32조), 국가 기밀에 대하여 핵심암호나 보통암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법적 책임(제33조), 핵심암호·보통암호의 유출 혹은 이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대응 절차와 법적 책임(제34조), 상용암호에 대한 인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 내지 경고, 나아가 이로 인한 불법소득 몰수와 벌금<sup>68)</sup> 병과(제35조), 검사 절차에 위배하여 인증을 통과하였거나 검사인증에 불합격한 상용암호 제품을 판매 또는 제공한 경우 시정조치 내지 경고, 나아가 이로 인한 불법소득 몰수와 벌금<sup>69)</sup> 병과(제36조), 상용암호로 보호되는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가 보안 평가 수행(혹은 안전성 평가)이나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혹은 안전심사를 받지 않고(혹은 불합격 통과)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sup>70)</sup> 시정조치 내지 경고, 나아가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사이버 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벌금 부과(제37조),<sup>71)</sup> 상용암호 수입허가명세서와 수출통제명세서 없이 수출입을 한 자는 국무원 상무부서 또는 관세청에서 법에 따라 처벌(제38조), 전자정부 혹은 전자인증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에 대한 시정조치 내지 경고, 나아가 불법제품이나 불법소득 몰수와 벌금<sup>72)</sup>을 병과(제39조), 암호 부서 관리자의 직권 남용, 암호 누설, 프라이버

66 동법 제31조 전반.

67 동법 제31조 후반.

68 불법소득이 30만 원안 이상의 경우에는 불법소득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이 30만 원안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안 이상 30만 원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69 불법소득이 10만 원안 이상의 경우에는 불법소득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10만 원안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안 이상 10만 원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70 상용암호가 국가 보안에 영향을 주는 경우 안전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의 미통과 제품 사용에는 구매 금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71 그 운영자는 10만 원안 이상 100만 원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직접 책임의 대표자에게는 만 원안 이상 10만 원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다.

72 불법소득이 30만 원안 이상의 경우에는 불법소득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30만 원안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안 이상 30만 원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시 침해 등에 대한 따른 처벌(제40조),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자의 형사책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민사책임(제41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 IV. 결론 및 시사점

역사적으로 암호(cryptography)는 각국 정부 특히, 정보기관이나 군사기관에 의해 처음 생성되어 자국의 기밀 등을 외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만들어졌고, 민간에서 암호를 처음 만들어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Data Encryption Standard)’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sup>73)</sup> 1997년 3월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암호 사용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에게 제시한 바 있으며<sup>74)</sup> 1994년 유럽연합(EU)에서는 수입과 수출 규제 차원에서 논의된 「암호법(EC No. 3381/94)」이 제정된 이후 개정이 지속되었다. 미국은 1996년부터 ‘수출행정규제(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특히 무기 분야)’에서 암호의 중요성과 규제를 폭넓게 다루었고, 2004년 프랑스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신뢰에 관한 법률(Law on Confidence in the Digital Economy)」이 제정되어 인터넷 사업자(ISPs), 전자상거래(e-commerce), 전자암호화(cryptography)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규제하였다.<sup>75)</sup> 중국 「암호법」은 타 분야의 중국 법률과 유사하게 정부 주도의 관리·감독 체계를 공고화하고 있다. 즉,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것은 예측할 수도 있으나, 탈중앙화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블록체인의 특성에 따라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될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sup>76)</sup>도 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암호법」은 없으나 1986년 5월 「전산망 보급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가 1999년 2월 전면 개칭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조항 등 암호화된 정보 보안과 사이버 인증에 관련된 규정이 다수 있다.<sup>77)</sup> 2011년 3월

---

73 Raphaël Barazza, “Encryption in France”, <https://www.at-ica.com/encryption-in-france/>.

7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홈페이지, <https://www.oecd.org/>

75 Bert-Jaap Koops, The Crypto Law Survey, Upload in February 2013, <http://www.cryptolaw.org/cls2.htm#prc>.

76 황재영, “시진핑 발언 다음날 통과한 ‘중국 ‘암호법’ 내용은?’”, 한겨레, 2019. 11. 19., <https://www.coindes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60397>.

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암호화), 제47조(인증)에 관한 규정이 있다.

29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의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다.<sup>78)</sup> 나아가 이상민 국회의원(제21대)이 2020년 9월 22일 「블록체인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여 암호화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자 하는 입법노력이 있으나, 이미 제20대 국회였던 2019년 3월에도 이상민 국회의원에 의해 동일 법률이 발의되어 자동 폐기된 적이 있다.<sup>79)</sup> 중국의 「암호법」이 암호의 분류·표준화·정보 보호에 효율적일뿐 아니라, 국가의 선제적 개입 하에 국가 안보와 상업 용 암호화의 이해 충돌 방지, 이용 촉진을 위한 암호전담 부서의 활동·책임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암호 관련 법규를 통합하여 「암호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78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와 제24조의2, 제75조에 암호화 관련 조치와 법적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개인 정보 누설 금지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다수 규정되어 있다.
- 79) 정인선, “이상민 의원, 블록체인진흥법 발의”, 한겨례, 2020. 9. 23., [http://www.coindes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1680&utm\\_inter=dable](http://www.coindes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1680&utm_inter=dable).

## 참고문헌

- 글로벌금융이슈, “중국 중앙은행디지털통화 시범사업 시행”, 금융브리프 제29권 13호, 2020. 7.
- 刘瑾, 中国 人民银行法定数字货币探索, 研究报告(2017年 第9期), 清华大学五道口金融学院.
- 周誉东·王晓琳, 密码法: “严”“宽”并举 促进密码事业, 全国人大, 2019年 11月 15日, 立法.
- 国家密码管理局政策法规室, 中华人民共和国密码法 解读, 政策法规(Policies & Regulations) December 2019.
- 陈亦超, 构建国家安全法律制度体系的重要环节 – 中华人民共和国密码法 几个问题解读 – 网事焦点, 2019年 11月.
- 陈红, 国家安全视域下中国特色商用密码信息安全法律体系构建, 哈工大博士论文, 信息安全与通信保密 June 2020.
- 李春伟, 深入践行依法治密 为密码事业创新发展保驾护航, 盟委保密机要局, 兴安日报 2020年 6月 15日 第006版 理论.
- 刘瑾, 中国 人民银行法定数字货币探索, 清华大学五道口金融学院, 研究报告(2017年 第9期), 1–21.
- 霍炜, 贯彻落实密码法推动网络可信体系发展, 信息安全研究, 第6卷第1期, 2020年 1月, 10–13.
- 王萍, 完善密码法治 筑牢网络安全, 中央人大, 2020年 2月 5日.
- 李兆宗(国家密码管理局局长), 新时代密码工作的坚强法律保障, 《人民日报》, 2019年 10月 29日 第10版.
- 李兆宗, 全面贯彻实施密码法 奋力开创新时代密码工作新局面, 交流, 2019年 11月.
- 黄奇帆, 中国央行会是全球第一个推出数字货币的央行五人理投, 来自雪球 2019年 2月 8日 (<https://xueqiu.com/3983581026/134776841>).
- Bert-Jaap Koops, “The Crypto Law Survey”, February 2013, <http://www.cryptolaw.org/cls2.htm#prc>.
- Raphaël Barazza, “Encryption in France”, <https://www.at-ica.com/encryption-in-france/>.
- 중국 국가암호관리국(国家密码管理局) 홈페이지: <http://www.oscca.gov.cn/>.
- 중국 인민대표대회(中国人民代表大会) 홈페이지: <http://www.npc.gov.cn/>.

## 참고문헌

- 网易号 홈페이지: <https://dy.163.com/article/ETB227H40519RAAQ.html>.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홈페이지: <https://www.oecd.org/>.

## 맞춤형 법제정보 신청 안내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 법제 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결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내용 정보

- 주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 법령의 제·개정 내용
- 국내 현안에 대한 외국 법제 현황 및 내용
- 정부 입법 정책 수립에 필요한 외국 법령 정보
- 정부 부처 관련 업무에 대한 법령 정보  
※ 개인적인 연구(예, 학위논문 작성) 관련 및 단순 법령은 제외되며,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범위의 정보제공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www.klri.re.kr](http://www.klri.re.kr))를 통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좌측 하단의 수요자 맞춤 서비스 중 “맞춤형 외국법제정보 신청하기 GO” Click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최신외국법제정보 담당자에게 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메일주소 : [foreignlaw@klri.re.kr](mailto:foreignlaw@klri.re.kr)  
※ 신청시, 대상 국가 법령 및 제도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야 합니다.

### 접수 및 문의



TEL. (044) 861-0482  
E-Mail. [foreignlaw@klri.re.kr](mailto:foreignlaw@klri.re.kr)

FAX. (044) 868-9919  
[www.klri.re.kr](http://www.klri.re.kr)

### 배포

- 정기간행물 형식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 중입니다.
- 신청하시는 경우 ‘최신외국법제정보’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ISSN 1976-0760



미래혁신과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글로벌 입법  
연구 플랫폼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일 2020년 11월 30일 | 발행인 김계홍 |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www.klri.re.kr](http://www.klri.re.kr))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 861-0300 | FAX (044) 868-9913

